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74
------------	-------

발의연월일 : 2018. 6. 21.

발의자 : 기동민 · 박주민 · 정춘숙

신창현 · 김상희 · 강창일

인재근 · 이철희 · 이재정

김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주요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바, 보건의료 분야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 수가 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u>구성하되,</u> 공 <u>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u> <u>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u> <u>다.</u>
② ~ ⑤ (생 약)	② ~ ⑤ (현행과 같음)